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해양레저관광진흥법시행규칙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이 제정(법률 제20178호, 2024. 1. 30. 공포, 2025. 1. 31. 시행)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종합계획의 공표방법(안 제2조)

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는데, 공표 방법·내용·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

나. 협회의 설립인가 등(안 제3조)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이 가능한 기관 등 외에 해양레저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,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교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협회 설립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
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
다.

제2조(종합계획의 공표방법)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
한다) 제4조제7항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
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
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표
해야 한다.

1. 공표 방법: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
표하며,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
재할 수 있다.
2. 공표 내용: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,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
다.
3. 공표 시기: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
공표해야 하며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
공표한다.

제3조(협회의 설립인가 등) 법 제12조제1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

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
2.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
3.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과가 설치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수 및 연구원
4. 해양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양레저관광 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